

의안 검토 보고

의안 번호	제 253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	
제안(출)자	서초구청장	제안(출)년월일	2002. 5. 2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김 재 근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고용직(지도원)의 정년이 현행 52세로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자녀교육과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저하된 사기진작을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을 52세에서 55세로 조정(안 별표)

2. 검토결과

가. 본 조례 개정안은

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'98.10. 2부터 고용직(지도원)공무원의 정년을 53세에서 52세로 1년 단축하여 시행하여 왔던 바,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에 조기퇴직을 하게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은

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의 정년을 52세에서 55세로 3년을 연장하는 내용임
(안별표)

다. 검토결과 의견

- o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그동안의 경과 및 현황을 검토한 바,
- o 1998. 10. 2. 전국적으로 시행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종전의 방법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년을 1년 단축(53세→52세) 하였으며,
- o 2000. 2. 16. 서초구의회에 지방고용직(지도원) 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을 현행 52세에서 55세로 개정요청하는 청원을 서초구소속 지도원 이봉주의 151명의 청원이 접수되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중 보류되었으며,
- o 2002년 4월 현재 우리구 지도원의 현황은 정원 112명, 현원은 111명으로서 현행 조례 적용시 예상퇴직자는 2002년 상반기 5명, 하반기 6명으로 2002년 11명, 2003년 18명, 2004년 13명임.
- o 고용직공무원(지도원)의 정년을 타구와 비교(2002. 5. 2. 현재)하면
 - 57세 : 종로, 용산, 강북, 은평, 노원, 영등포 등 6개구
 - 56세 : 광진, 마포, 동작 등 3개구
 - 55세 : 성동, 서대문, 강서, 구로, 관악, 송파, 강동 등 7개구
 - 54세 : 중구
 - 53세 : 성북, 도봉, 양천 등 3개구
 - 52세 : 동대문, 중랑, 금천, 동작, 강남 등 5개구이며
- o 정년연장을 위한 년도별 조례개정 자치구 현황은
 - 1999년 : 용산(57세), 노원(57세), 강동(55세)
 - 2001년 : 성동(55세), 서대문(55세), 관악(55세)
 - 2002년 : 종로(57세), 강북(57세), 은평(57세), 마포(56세), 영등포(57세), 송파(55세) 등 1999년 이후 총 13개구에 이르고 있음.

○ 본 조례안 개정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

- 장점으로는

- 지도원의 근무연령 연장으로 제안이유와 같이 생계안정 등으로 사기 진작과 친절봉사 및 능률향상
- 숙련된 소요인력 확보 및 고용안정
- 정년이 연장된 서울시 타구청과 형평성 유지

- 단점으로는

- '98.10.2. 당시 구조조정명분 퇴색 및 기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 발생
- 호봉누적 등 인건비 증가등임.

○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한 바,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“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, 임용절차, 근무상한 연령,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” 로 되어 있고,
-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의 현행 52세는 사회활동을 가장 많이 할 시기에 퇴직하게 되어 자녀교육 및 생활에 대한 불안으로 사기저하라는 문제 점이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개정내용이 타당한 점이 있으며,
- 서울시 타구청에서 55세이상 57세까지 정년을 연장 또는 유지하는 구가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중 16개구에 달하고 있어 이들 구청과 형평성 유지
- '98.10.2. 구조조정당시 경제 보다 현재의 경제가 가시적으로 호전된 점과 정년연장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행정의 능률성, 고용안정등의 긍정적인 면 그리고 당시 구조조정명분 등을 종합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또한, 안 별표 하단에 현행조례상 규정되어 있는

“비고 : 지도원은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자를 임용함에
그친다” 를 삽입하여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3. 참고사항

□ 관련법령

- o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, 제4항
- o 지방자치법 제15조

[관련법령]

< 지방공무원법 >

제2조 (공무원의 구분)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.

②"경력직공무원"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6. 12. 30>

3. 기능직공무원: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

③"특수경력직공무원"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1991. 5. 31, 1997. 12. 13, 1998. 9. 19>

1. 정무직공무원

가.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

나.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2. 별정직공무원

가. 비서관·비서

나. 삭제 <1994. 12. 22>

다.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3. 계약직공무원: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4. 고용직공무원: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·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·임용절차·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.

<개정 1982. 12. 28, 1998. 9. 19> (전문개정 1981. 4. 20)

< 지방자치법 >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